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산불 등 재난피해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21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산불 등 재난피해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br>.....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8.
3. 회부연월일 : 2025. 5.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햄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25. 3. 안동지역 대규모 산불 등의 재난으로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함.

특히, 수익사업 불가 및 사유지 내 가설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이에 규제자유특구 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복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규제특례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재난피해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갖고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복구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84조의2(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지원) <u>규제자유특구에서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갖고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복구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u> |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경북·경남·울산 지역 소재 규제자유특구<sup>1)</sup> 중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위치한 3개 기관의 스마트팜 시설, 하이브리드 온실 등이 전소되거나 시설에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sup>2)</sup>.

개정안은 이러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복구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들이 지역혁신사업에 조속히 전념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현행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

---

1) 2025년 5월 기준으로 경북 지역에는 4개의 규제자유특구(산업용 헴프(Hemp), 스마트그린물류, 차세대 무선충전, 세포배양식품)가, 경남 지역에는 5개의 규제자유특구(무인선박,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가, 울산 지역에는 4개의 규제자유특구(수소그린모빌리티, 계층서비스산업, 이산화탄소 자원화, 암모니아 병커링)가 각각 소재해 있음

2) 피해현황은 [참고자료 1] 참고

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응·대비·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5년 5월 같은 법 제66조제3항<sup>3)</sup>의 개정<sup>4)</sup>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4) 법률 제2096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5.5.27.공포, 2025.11.28. 시행 예정). 다만,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 등의 개정규정은 2025.3.21.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1] 2025년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 기존                                                                                                                                                                                                                        | 개정                                                                                                                                                                                                                                                                       |
|---------------------------------------------------------------------------------------------------------------------------------------------------------------------------------------------------------------------------|--------------------------------------------------------------------------------------------------------------------------------------------------------------------------------------------------------------------------------------------------------------------------|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br><br>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생략)<br><br>1. ~ 5. (생략)<br><br>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소상공인에 대한 지원</u><br><br><u>&lt;신 설&gt;</u>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br><br>③ -----<br>-----<br>-----<br>-----<br>-----<br>-----<br><br>1. ~ 5. (현행과 같음)<br><br>5의2. -----<br>----- <u>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u><br><br>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u> |
| 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                                                                                                                                                                                                                                                                          |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재정리

개정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규정된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과 그 대상·내용·범위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표 2] 개정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비교

| 구분          | 개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 지원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가진 시설을 설치한 자</li> <li>- 규제자유특구사업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li> <l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li> <li>-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li> </ul> |
| 지원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피해 시설 복구비 지원</li> <li>-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복구사업비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li> <li>-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li> </ul>            |
| 지원 재난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 등 재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재난”</li> </ul>                                                |
| 재량·의무 규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량규정</li> </ul>                                                                            |

자료: 개정안을 참고하여 재정리

먼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①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갖고 설치한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의 복구를 지원하고, ②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복구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특구 목적<sup>5)</sup>과 직접적 연관을 가진 시설’을 설치한 자는 규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는 산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제자유특구사업자 외에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에 인프라 등을 설치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이고,

2025년 기준 규제자유특구사업자<sup>6)</sup>(총 734개)에는 중소기업 346개(47.1%), 소상공인 148개(20.2%), 대기업 30개(4.1%), 중견기업 52개(7.1%), 공공기관 134개(18.3%), 대학 24개(3.3%)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sup>7)</sup>

개정안의 지원 대상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피해시설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소상공인보다 확대되는지 여부 및 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가진 시설을 설치한 자의 범

---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등”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3.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7) 세부현황은 [참고자료 2] 참고

위 등을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지원 재난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sup>8)</sup>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정의를 참고하여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피해 지원의 재량·의무규정 여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달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 등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sup>9)</sup>의 사례를 참고할 때, 피해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정할지 재량 사항으로 정할지 여부는 재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시급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sup>10)</sup>.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피해복구 비용지원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재난 발생에 대한 지원 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금,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상금, 지원금,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개정안의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유사 입법례<sup>11)</sup>를 참고할 때 중복지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

---

9)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10)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법제기준과 실제」(2024.5. pp.469-481)에서는 개별 법률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지급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 예산의 경직적 편성, 재정부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의무·재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유사 입법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

점은 없어 보임.

참고로, 규제자유특구 내의 재난피해기업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sup>12)</sup>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으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sup>13)</sup> 및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sup>14)</sup>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점,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의 법률 제정안<sup>15)</sup>이 산불피

---

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1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2호,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13) 의안번호 2209774호(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01호(정희용의원 대표발의)

14) 의안번호 2210419호(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53호(정희용의원 대표발의)

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예정)되어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시설복구비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임에 따라 중복 입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467 |

---

15)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615호,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855호,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57호,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98호,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670호,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 1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산불 피해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 □ 피해현황

## ○ 업체별 시설물 피해 상황

\* 상상텃밭(주), (주)에이팩 시설은 시운전을 통해 정상가동 여부 확인 필요

| 업체명            | 대표자 | 시설       | 면적(m <sup>2</sup> ) | 피해상황                   | 비고           |
|----------------|-----|----------|---------------------|------------------------|--------------|
| (주)농부심보        | 조만수 | 스마트팜 시설  | 1,157               | 전소                     |              |
| *상상텃밭(주)       | 김수빈 | 스마트팜 시설  | 801                 | 피해 없음                  |              |
| (주)에이팩         | 송규섭 | 스마트팜 시설  | 264                 | 전소                     | 일부 시설(지붕) 손실 |
|                |     | 하이브리드 온실 |                     |                        |              |
| (주)엔씽          | 김혜연 | 스마트팜 시설  | 208                 | 전소                     | 특구 해지        |
|                |     | 컨테이너     |                     | 전소                     |              |
| 플랜티팜(주)        | 강대현 | 스마트팜 시설  | 194                 | 전소                     | 특구 해지        |
| (재)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 | 전익조 | 공동 컨테이너  | 8.5                 | 일부 시설(외벽 및 에어컨 실외기) 손실 |              |

## □ 현장사진

## ○ 재배시설 현장사진

| (주)농부심보 (전소)                                                                        |                                                                                     | 상상텃밭(주) (피해 없음)                                                                      |                                                                                       |
|-------------------------------------------------------------------------------------|-------------------------------------------------------------------------------------|--------------------------------------------------------------------------------------|---------------------------------------------------------------------------------------|
|  |  |  |  |
| (주)에이팩 (1개동 전소, 1개동 일부 손실)                                                          |                                                                                     | (주)엔씽 (전소)                                                                           |                                                                                       |
|  |  |  |  |

## 2

##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 지정              | 특구명              | 사업자 | 분 류 |      |      |      |      |    |
|-----------------|------------------|-----|-----|------|------|------|------|----|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공공기관 | 대학 |
| 1차<br>(‘19.7월)  | 대구 스마트웰니스        | 35  | -   | 1    | 16   | 12   | 5    | 1  |
|                 | 부산 블록체인          | 23  | -   | 2    | 16   | 3    | 2    | -  |
|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 33  | -   | -    | 6    | 5    | 18   | 4  |
|                 | 전남 e-모빌리티        | 21  | -   | 1    | 11   | 9    | -    | -  |
|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17  | 1   | 2    | 8    | 4    | 2    | -  |
|                 | 세종 자율주행          | 18  | 2   | 1    | 9    | 3    | 3    | -  |
|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11  | -   | 1    | 1    | 7    | 2    | -  |
| 2차<br>(‘19.11월) |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 19  | -   | -    | 8    | 10   | 1    | -  |
|                 | 대전 바이오메디컬        | 40  | -   | -    | 23   | 9    | 8    | -  |
|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 32  | 5   | 3    | 15   | 4    | 5    | -  |
|                 | 전북 친환경자동차        | 22  | -   | 2    | 15   | 2    | 3    | -  |
|                 | 전남 에너지신산업        | 14  | -   | 2    | 10   | -    | 2    | -  |
|                 | 경남 무인선박          | 20  | 1   | 2    | 11   | -    | 6    | -  |
|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 17  | 1   | 2    | 6    | 7    | 1    | -  |
| 3차<br>(‘20.7월)  | 부산 해양모빌리티        | 10  | -   | -    | 4    | 2    | 3    | 1  |
|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 18  | -   | 2    | 8    | 4    | 4    | -  |
|                 | 울산 계층서비스산업       | 16  | -   | -    | 8    | 4    | 4    | -  |
|                 | 강원 액화수소산업        | 36  | 2   | 4    | 13   | 10   | 5    | 2  |
|                 |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 17  | 1   | 1    | 8    | 5    | 2    | -  |
|                 | 전북 탄소 융·복합산업     | 16  | -   | 1    | 7    | 3    | 5    | -  |
|                 | 경북 산업용 헴프(Hemp)  | 38  | -   | 5    | 15   | 12   | 5    | 1  |

| 지정              | 특구명                               | 사업자 | 분 류 |      |      |      |      |    |
|-----------------|-----------------------------------|-----|-----|------|------|------|------|----|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공공기관 | 대학 |
| 4차<br>(‘20.11월)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 13  | -   | -    | 5    | 5    | 3    | -  |
|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 17  | -   | 2    | 4    | 8    | 3    | -  |
|                 | 경남 5G활용 차세대스마트공장                  | 17  | 2   | 2    | 5    | 4    | 3    | 1  |
| 5차<br>(‘21.7월)  | 강원 정밀의료산업                         | 19  | -   | 1    | 9    | 3    | 3    | 3  |
|                 | 충북 그린수소산업                         | 11  | 2   | 2    | 4    | -    | 3    | -  |
|                 |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 7   | 1   | 2    | 3    | 1    | -    | -  |
|                 |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 13  | 1   | 1    | 9    | 2    | -    | -  |
| 6차<br>(‘21.11월)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 17  | 1   | -    | 10   | -    | 3    | 3  |
| 7차<br>(‘22.8월)  | 전남 개조전기차                          | 10  | -   | -    | 6    | 3    | 1    | -  |
|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 10  | 2   | 1    | 4    | 2    | 1    | -  |
|                 | 경남 암모니아 혼소<br>연료추진시스템 선박          | 19  | 4   | 1    | 11   | 1    | 2    | -  |
| 8차<br>(‘23.5월)  |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br>청정수소 생산·활용(취소) | -   | -   | -    | -    | -    | -    | -  |
|                 |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 14  | -   | -    | 7    | 1    | 5    | 1  |
| 9차<br>(‘24.6월)  | 경북 세포배양식품                         | 11  | -   | -    | 8    | -    | 3    | -  |
|                 | 대구 이노(Inno) - 덴탈                  | 6   | -   | -    | 2    | -    | 2    | 2  |
|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 14  | -   | 4    | 5    | -    | 2    | 3  |
|                 |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 8   | -   | -    | 5    | -    | 3    | -  |
|                 | 충남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 6   | -   | -    | 4    | -    | 2    | -  |
| 10차<br>(‘25.5월) | 대전 우주기술연구·활용                      | 11  | 1   | 1    | 6    | -    | 2    | 1  |
|                 |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 23  | 3   | 2    | 13   | 1    | 3    | 1  |
|                 | 전북 기능성식품                          | 15  | -   | 1    | 8    | 2    | 4    | -  |
| 합 계             |                                   | 734 | 30  | 52   | 346  | 148  | 134  | 24 |